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規定廢止規定(案)

○廢止理由

事務管理規定(大統領令 第13990號 91.6.19) 및 同規定施行規則(總理令 第395號, 91.9.30) 이 制定·公布됨에 따라 現행 “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規定”을 廢止하고, “서울特別市麻浦區公印條例”를 制定함으로써 公인관수 및 管理에 충실을 기하고자 管理方法을 定하려는 것임.

○關聯法規：事務管理規定(大統領令 第13990號)

—第41條(公印)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관하여는 이 章의 규정에 불구하고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한다.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規定廢止規定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規定은 이를 廢止한다.

附 則

이 規定은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條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.